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578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5. 6. 18.
제안자 : 주택공간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인 임대주택 변경은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.
-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경미한 변경 대상에서 제외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촉진계획 중 임대주택 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 계획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(안 제5조제1항제4호).
- 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사업에서 촉진사업에 해당하는 ‘소규모주택 정비사업’과 ‘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’ 유형을 제외함(안 제5조제1항제15호).
- 경미한 변경 대상사업은 존치관리구역에서 추진되는 경우로 한정함(안 제5조제1항제15호).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단, 관계법령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 계획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안 제5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5. 존치관리구역에서 「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,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),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), 「주택법」 제6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결정절차를 이행하고 심의를 완료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

제5조제2항제4호 중 “제15호 전단의”를 “제15호에 해당하는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5조(재정비축진계획의 경미한 변경)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“그 밖에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 1. ~ 3. (생략) 4. 임대주택 연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건립세대 및 규모별 건립비율의 변경 <단서 신설>	제5조(재정비축진계획의 경미한 변경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임대주택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단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 이상으로 함	제5조(재정비축진계획의 경미한 변경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개정안과 같음) 4. ----- ----- ----- ----- 단, 관계법령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 계획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5. ~ 14. (생략)	5. ~ 14. (현행과 같음)	5. ~ 14. (개정안과 같음)

음)

15. 존치관리구역에
서 「서울특별시 청
년안심주택 공급
지원에 관한 조
례」 제9조에 따른
사업계획의 결정절
차를 이행하고 심
의를 완료하여 재
정비촉진계획의 변
경이 필요한 경우.
이 경우, 주민의 의
견을 들은 이후 해
당 자치구의회의
의견을 들어야 한
다.

15. 재정비촉진지구
에서 「서울특별
시 안심주택 공급
지원에 관한 조
례」 제9조, 「빈
집 및 소규모주택
정비에 관한 특례
법」 제29조(재정
비촉진사업 중 가
로주택 정비사업,
소규모재건축사업
및 소규모재개발
사업에 한한다),
「서울특별시 역
세권 활성화사업
운영 및 지원에 관
한 조례」 제11조,
「서울특별시 역
세권 장기전세주
택 공급 및 지원에
관한 조례」 제8조,
「주택법」 제66조
등에 따른 사업계
획의 결정절차를
이행하고 심의를
완료하여 재정비

같은)

15. 존치관리구역에
서 「서울특별시
안심주택 공급 지
원에 관한 조례」
제9조, 「서울특별
시 역세권 활성화
사업 운영 및 지원
에 관한 조례」 제1
1조(도시정비형
재개발사업은 제
외한다), 「서울특
별시 역세권 장기
전세주택 공급 및
지원에 관한 조
례」 제8조(도시정
비형 재개발사업
은 제외한다),
「주택법」 제66조
에 따른 사업계획
의 결정절차를 이
행하고 심의를 완
료하여 재정비촉
진계획의 변경이
필요한 경우

	<u>촉진계획의 변경</u> <u>이 필요한 경우</u>	
②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“그 밖에 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 1. ~ 3. (생략) 4.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및 <u>제15호</u> <u>전단의</u> 사항 ③ (생략)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개정안과 같음) 4. ----- ----- <u>제15호</u> <u>에 해당하는</u> -- ③ 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4호 중 “임대주택 연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”을 “임대주택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관계법령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 계획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5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“제15호 전단의 사항”을 “제15호에 해당하는”으로 한다.

15. 존치관리구역에서 「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,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),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), 「주택법」 제6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결정절차를 이행하고 심의를 완료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)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“그 밖에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	제5조(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임대주택 연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건립세대 및 규모별 건립비율의 변경 <단서 신설></u>	4. <u>임대주택</u> ----- ----- ----- --. 단, 관계법령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 계획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5. ~ 14. (생략)	5. ~ 14. (현행과 같음)
15. <u>존치관리구역에서 「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결정절차를 이행하고 심의를 완료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. 이 경우, 주민의 의견을 들은 이후 해당 자치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u>	15. <u>존치관리구역에서 「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,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1조 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),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), 「주</u>

16. (생략) ②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“그 밖에 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 1. ~ 3. (생략) 4.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및 <u>제15호 전단의 사항</u> 5.·6. (생략) ③ (생략)	<u>택법」 제6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결정절차를 이행하고 심의를 완료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</u> 16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 <u>제15호에 해당하는</u> 5.·6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---	---